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27
----------	-----

발의년월일 : 2006. 6. 5
발 의 자 : 최광렬의원의외 6인

1. 제안이유

2006. 4. 28일(법률 제7935호)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본문 중 특별위원회의 명칭 부분을 보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본문 중 특별위원회의 명칭 부분 보완 정비

(안 제70조제1항, 제7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2조 제1항,제2항, 제82조제1항, 제2항,제4항, 제85조제1항,제86조제1항)

나.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 심사 및 보고 사항을 보완(안 제85조의2 신설)

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과 선포에 관한 필요한 사항 보완(안 제86조제1항)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및 제50조의2

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

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1항, 제71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72조 제1항, 제2항, 제82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85조 제1항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각각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윤리 심사 및 보고)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이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 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

② 윤리 심사에 관한 요구와 회부, 시한, 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82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의 제목 “(징계의 의결과 선포)”를 “(윤리 심사 및 징계의 의결과 선포)”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부터” 다음 “윤리 심사 및”을 삽입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그 청구서를 <u>징계자격특별위원회</u>에</p> <p>② (생략)</p> <p>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등) ①</p> <p>..... 이를 <u>징계자격특별위원회</u>에</p> <p>② <u>징계자격특별위원회</u>는 청구서와</p> <p>.....</p> <p>③ <u>징계자격특별위원회</u>는 심사보고서를</p> <p>.....</p> <p>④ (생략)</p> <p>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인) ① <u>징계자격특별위원회</u>는 필요한 때에는</p> <p>② 피심위원은 <u>징계자격특별위원회</u>의 허가를 받아</p> <p>③ (생략)</p> <p>제82조(장계의 요구와 회부) ①</p> <p>.....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u>징계자격특별위원회</u>에 회부한다.</p> <p>②</p> <p>..... 본회의에 보고하고 <u>징계자격특별위원회</u>에 회부한다.</p> <p>③ (생략)</p> <p>④</p> <p>.....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u>징계자격특별위원회</u>에 회부한다.</p> <p>⑤ (생략)</p> <p>제85조(심문 및 변명) ① <u>징계자격특별위원회</u>는 의장을 경유하여</p> <p>② (생략)</p>	<p>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그 청구서를 <u>윤리특별위원회</u>에</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등) ①</p> <p>..... 이를 <u>윤리특별위원회</u>에</p> <p>② <u>윤리특별위원회</u>는 청구서와</p> <p>.....</p> <p>③ <u>윤리특별위원회</u>는 심사보고서를</p> <p>.....</p> <p>④ (현행과 같음)</p> <p>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인) ① <u>윤리특별위원회</u>는 필요한 때에는</p> <p>② 피심위원은 <u>윤리특별위원회</u>의 허가를 받아</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2조(장계의 요구와 회부) ①</p> <p>.....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u>윤리특별위원회</u>에 회부한다.</p> <p>②</p> <p>..... 본회의에 보고하고 <u>윤리특별위원회</u>에 회부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p> <p>.....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u>윤리특별위원회</u>에 회부 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제85조(심문 및 변명) ① <u>윤리특별위원회</u>는 의장을 경유하여</p> <p>②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제86조(장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p> <p>.....</p> <p>② (생략)</p>	<p>제85조의2(윤리 심사 및 보고)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이 「부산광역시 시허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 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p> <p>② 윤리 심사에 관한 요구와 회부, 시한, 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82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86조(윤리 심사 및 장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u>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u> 심사보고서를</p> <p>② (현행과 같음)</p>